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2. 4. 18.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4월 1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87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(2002. 4. 18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조 한 영

가. 제안이유

민원창구만을 통하여 발급하던 각종 제증명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·설치하여 발급함에 따라,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행되는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각종 제증명 발급시의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방법외에 새롭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방법을 신설함. (안 제4조 제1항)
-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계기사용부서의 장으로 규정함. (안 제4조 제3항)
- 무인민원발급기로 통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 되도록 규정함. (안 제4조 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은 마포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 중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규정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·설치 발급함에 따른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<주요개정내용>

○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수수료 납부방법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납부방법을 추가하고,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계기사용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규정하는 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윤한호 위원) :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되는 각종 제증명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대책은 있는가?

○ 답변요지(조한영 재무과장) : 지문인식 등 확인에 의하여 본인에게만 발급되도록 함.

○ 질의요지(유웅봉 위원) :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되는 각종 제증명 중 본인확인 없이 발급되는 것도 있나?

○ 답변요지(조한영 재무과장) :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2. 4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민원창구만을 통하여 발급하던 각종 제증명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·설치하여 발급함에 따라,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행되는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각종 제증명 발급시의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한 방법외에 새롭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방법을 신설함.
(안 제4조제1항)
- 나. 제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 제기의 관리책임자는 제기사 용부서의 장으로 규정함.(안 제4조제3항)
- 다. 무인민원발급기로 통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 증지가 표시 되도록 규정함.(안 제4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(2000.10.13 대통령령 제16978호) 제11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 : 민원봉사과 및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(2002.2.28~2002.3.20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1부
-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조제목 “(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)”을 “(계기의 사용)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항중 “수입증지요금계기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”로 하며, 동조제3항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계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”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.

제5조의 조제목중 “수입증지요금계기”를 “계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) ① 구 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”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4조(계기의 사용) 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계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</u></p> <p>④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.</p>
<p>제5조(수입증지요금계기 인영 수입증지의 종류 등)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,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</p>	<p>제5조(계기)</p>